

## 제 16차 실행이사회

○ 일시 : 1986. 10. 10(금) 07-30-09:00

○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 1. 제규정 제정 및 개정(안) 의견취합

제 1 차 정기이사회('86. 9. 16)의 위임결의에 따라 회장단에서 검토중에 있는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실행이사들중 의견이 있는 분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개별의견을 제출토록 하고 검토중인 규정 개정(안)이 성안되면 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하다.

### 2. 의료관계 법규 개선연구

현행 의료관계 법규중에는 불합리하고 개선되어야 할 조항이 많기 때문에 동법규를 근거로 하는 유권해석 자체가 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질의에 신중을 기하고, 의료관계 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본회 의료법 개정 연구위원회에서 외국 등 필요한 자료를 토대로 설득력있는 개정안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이며 의원입법 가능성에 관해서는 회장단에 위임키로 하다.

### 3. 가정의 전공의 수련

가정의 수련도 타 전문과 수련과 동일하게 인턴 1년 이수후 레지던트 수련을 실시케 되어 있으므로 정원 책정기준 및 전공의 모집절차 등에 관해서 보사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그 결과를 수련병원에도 주지시켜 '87년도부터 가정의 전공의 모집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키로 하다.

### 4. AHF 결산 잔액 송금 검토

본회의 AHF 예산 결산 잔액 4,286,587원('85. 5. 10기준)을 회장국인 인도네시아로 송금하는 여부에 관해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과거 일본에서도 상당액의 집행잔액이 있었으나 당시 후임 회장국인 필리핀에 인계해주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으므로 일본측의 의사도 타진후 신중히 처리키로 협의하다.

### 5. 회비납부율 제고

사무국의 노력으로 '86년도에는 회비 납부율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수련심사비를 납부치 않는 수련병원이 있으므로 심사신청시 심사비

와 함께 납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납부율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기로 하다.

(승인사항)

### 1. 신회관 비품 조변업무 위임

마포에 건립중인 본회 신회관에 소요되는 각종 비품류를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취할 경우 최소한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입주예정일인 '86. 11. 15 까지 조변하기가 어려우므로 회장단에 위임하여 추진키로 승인하다.

### 2. 이사보선

송준영 전 계명대학교 동산 병원장의 병원장 사임에 따른 후임이사에는 관례대로 동병원 후임 하재창 병원장을 선임키로하고, 강치명 지방공사 제주의료원장의 제주도 지부장 사임에 따른 후임이사에는 김병찬 제주한라병원장 (제주도 지부장)을 선임키로 하고 차기이사회에 추천받기로 하다.

## 제17차 실행이사회

○ 일시 : 1986. 10. 17 (금) 07 : 30 - 09 : 00

○ 장소 : 본회 회의실

(협의사항)

### 1. 정신과 현황파악

최근 2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대해 정신과 설치를 의무화하는 문제가 재론되고 있으므로 정부행정기관이나 국회에서 동 문제가 거론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원병원중에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존 정신과병동의 병상이용률과 1인당 진료환자수 등을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답변 자료를 준비키로 하다.

### 2. 지부호칭변경 의견 취합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질의된 『관련단체의 지부호칭과 균형을 유지하고 시도지부의 자치 독립성을 높이며 업무활성화를 위해 지부호칭을 각 시·도병원회, 지회 또는 병원협회로 변경 호칭』토록 하는 문제를 토의한 결과 『현행 호칭에 대한 관습과 본회와 지부와의 연계 체계 등을 고려하여』보다 신중을 기하는 뜻에서 전국지부 및 이사들의 의견을 취합 후 재상정 토의함이 좋겠다는 제의(한용철이사)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키로 하다.

### 3. 規程 制定 및 改定 (안) 심의

회장단과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9개항목의 규정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신현탁부회장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상근임원제, 정기감사의 매분기 실시, 국외출장여비기준 및 회비부과조항 등에 관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회장단에서 규정(안)을 검토하여 규정 안건별로 실행이사회에 상정심의키로 하는 한편, 본회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 보다 합리적인 규정안을 마련키로 하다.

■ 編輯委員 : 韓斗鎭 · 朴利甲 · 金世民 · 黃泰植 · 林隆義

## 대한병원협회지

(通卷 139 號)

'86년 11월호 (月刊)

등록일자 : 1972년 4월27일

등록번호 : 제 라 1691호

인쇄일 : 1986년 10월 30일

발행일 : 1986년 11월 1일

發行人 : 白 樂 暉

編輯人 : 黃 泰 植

印刷人 : 朴 善 奎

발행소 社團法人 大韓病院協會

우편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 가 49 전화 : 272-8905

JOURNAL  
OF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Vol 15, No. 11

Nov. 1986

Publisher : Nak Whan Paik

Editor in Chief : Tae Sik Hwang

Published Monthly

by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49, 2-Ga, Chung Moo-Ro,  
Seoul, Korea TEL. 272-8905

\*이 協會誌에 게재된 내용은 반드시 본회의 公式的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